임원선거관리규정

[2012. 8.22. 전문개정]

제정	1997.10.14	개정	2005. 5.10
개정	1997.11.11	개정	2007. 1.16
개정	1998. 2.10	개정	2012. 8.22
개정	2001. 2. 9	개정	2012. 9.12
개정	2001. 5. 8	개정	2014. 6.18
개정	2001.10.16	개정	2017. 1.18
개정	2005. 1.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에서 정한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협회 회장 선거에 적용하며, 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②시도건축사회 또는 지역건축사회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협회”는 각각 “시도건축사회” 또는 “지역건축사회”로 본다. <개정 2014. 6.18>

③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사 및 감사 선출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6.18>

제3조(선거관리) ①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선거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②사무기구(시도건축사회 및 지역건축사회를 포함한다)는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지시와 지휘를 받으며 상근임직원은 선거에 직간접으로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18>

③위원회는 선거가 혼탁해 지거나 과열이 있은 때 또는 후보자등(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선거관련 위반으로 신고되어 3회 이상 사실로 확인 된 때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등의 일일 선거 활동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④후보자등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근거 등에 대하여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18>

⑤이 규정에서 계산되어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절상한다. <신설 2014. 6.18>

제3조2(선거공고)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150일 전에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건축문화신문, 월간 건축사지 등에 1회 이상 선거를 공고한다
<본조 신설 2017. 1. 18, 시행일 2017. 3. 1>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해산) ①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300일 전까지 설치하며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산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해산일자를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②위원장은 현직에서 가장 가까운 전임회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③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시도건축사회별 회원수를 고려하여 위원장과 이사회가 동수로 지명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1.18, 시행일 2017. 3. 1>
④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 등 운영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6.18>
⑤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후보등록을 하려면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⑥선거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4. 6.18>

제5조(위원회 업무) ①위원회 업무의 주요내용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18>
1. 선거공고 및 관련사무
2. 후보자등의 등록
3. 선거인명부
4. 선거 및 관련사무
5. 선거홍보 및 광고
6. 투·개표 관리
7. 당선인 확정
8. 선거 및 이와 관련된 사안의 심사·처분 및 결정
9.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신설 2014. 6.18>
1. 선거일
2. 후보자등의 등록 및 절차
3. 선거 절차 및 투표 방법
4.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③선거공고는 협회 홈페이지,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협회 정기간행물 등이나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14. 6.18>
④선거공고는 선거공보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4. 6.18>

제 2 장 선거인

제6조(선거인 및 후보자 구분) ①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정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4. 6.18>

②‘후보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6.18>

③‘예비후보자’라 함은 제17조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하여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 6.18>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효력) ①정회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 확정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사람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6.18>

②제8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 등재된 정회원이 아니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14. 6.18>

③정관 제9조제3항에 따라 피선거권이 제한된 경우나 선거공고일 현재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 처분된 사람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4. 6.18>

제8조(선거인명부) ①위원회는 선거공고일 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 6.18>

②선거인명부는 선거공고일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이때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여 자신의 선거인명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 6.18>

③선거인명부의 공고내용과 열람방법, 열람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우편, 기타 위원회가 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1회 공지한다. <신설 2014. 6.18>

④선거인 또는 피선거인은 선거인명부의 기재사항에 이의가 있은 때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일 10일 전까지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18>

⑤제4항의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3일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신설 2014. 6.18>

⑥선거인명부는 선거일 7일 전에 확정한다. <신설 2014. 6.18>

⑦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인명부의 발급 신청을 한 때에는 사본으로 교부 할 수있다. 이 경우 선거인의 개인정보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제 3 장 후 보 자

제9조(후보자 등록) ①예비후보자는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아야 후보자로 등록된다. <개정 2014. 6.18>

②후보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18>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
4. 선거공보 원고
5. 기탁금
6. 선거운동원 명부 <신설 2017.1.18, 시행일 2017. 3.1>

③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심사 결과를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8, 시행일 2017. 3.1>

④후보자의 후보등록 마감은 선거일로부터 45일 이전까지 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보 등록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까지 등록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18, 시행일 2017. 3. 1>

제9조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 등록마감은 선거일 90일전까지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등록통지를 받아야 등록 된다. <개정 2017.1.18, 시행일 2017. 3.1>

②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18>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2. 입후보 소견서
3. 이력서
4. 제9조의2제1항에 의한 기탁금의 50% 선납

③전항의 선납된 기탁금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후보자등의 사퇴 또는 후보자등의 귀책사유로 제16조의2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된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18>

<제17조에서 조문이관 정리 2017. 1.18>

제9조의3(기탁금) ①기탁금은 3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②기탁금은 선거관리 등 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기탁금으로 선거비용이 부족한 때에는 협회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③기탁금은 선거관리 비용을 정산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해 입후보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우선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녀(자녀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에게 반환한다.

1. 후보자가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선거비용 정산 잔액의 전액
2.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탁금 전액

④후보자등이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그 후보자등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 6.18>

1. 후보자등이 사퇴한 때
2.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수의 15% 미만인 때
3. 후보자등이 제16조의2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된 때. 이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후보자등 관계인의 귀책사유에 한한다.

제10조(등록무효 및 당선무효 등) ①위원회는 후보자등의 사유 또는 후보자등 이외의 사유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된 때에는 제16조의2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낙선자는 불문에 부친다. <개정 2014. 6.18>

1. 후보자등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된 때
2. 고의적으로 후보자등의 등록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4. 정관 또는 제 규정이나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위반한 때
5. 위원회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당선무효는 후보자가 당선된 이후 등록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명백히 입증되거나 선거당일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때 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③위원회는 제16조의2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개정 2014. 6.18>

제11조(후보자 공고) ①위원회는 후보자등의 등록사항 및 등록변경사항을 선거인에게 공고한다. <개정 2014. 6.18>

②위원회는 후보자등의 각종 위반사실이나 부당한 선거운동 등에 대하여 이를 선거인에게 공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제12조(후보자 사퇴) ①후보자등이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②사퇴서를 제출한 후보자등은 당해선거에 다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4. 6.18>

제13조(현직임원의 후보자 등록) ①각 호에 해당하는 정회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전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에 다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무를 정지한다. <개정 2017.1.18, 시행일 2017.3.1>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2. 시도건축사회장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직무 정지되는 자의 직무정지 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1.18, 시행일 2017.3.1>

제 4 장 선거운동

제14조(선거운동기간 및 범위) ①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선거 직전일 자정까지로 하며,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8, 시행일 2017. 3.1>

1. 위원회가 직접 개최하거나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2. 선거사무소 개설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3. 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
4. 후보자등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영
5. 선거공보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홍보
6. 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메시지 등 SNS를 통한 홍보
7.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이 경우 선거인을 방문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8. 후보자등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의 착용
9.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

②후보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3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는 1개소에 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8, 시행일 2017. 3.1>

③선거운동원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발급한 선거운동원 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8, 시행일 2017.3.1>

④ <삭제 2017.1.18, 시행일 2017.3.1>

⑤ 제1항 제5호의 전자우편과 제6호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관계인을 포함한다) 1인당 총 10회 이내에서 위원회가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7.1.18, 시행일 2017.3.1>

제14조의2(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은 예비후보자 등록

일로부터 후보자등록 직전까지로 하며, 각 호에서 정한 선거운동 이외에 다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회 정기간행물을 통한 자기광고
2. 예비후보자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운영
3. 명함을 직접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이 경우 선거인을 방문하여 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한 방법

<본조 신설 2017.1.18, 시행일 2017. 3.1>

제15조(선거홍보) 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선거홍보의 종류 및 방법 등은 각 호 중에서 선택한다. <개정 2014. 6.18>

1. 선거공보
2. 협회 정기간행물
3. 후보자 합동토론회
4. 모바일 및 전자매체
5. 홈페이지
6.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후보자토론회는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며, 시도건축사회 또는 협회 산하기구가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토론에 관한 내용과 방법 등 세부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18>

③후보자등이 협회 정기간행물에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회수를 합하여 5회 이하로 제한하며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금 외에 후보자등이 별도로 부담한다. <개정 2014. 6.18>

④제3항의 광고에 대한 시안은 광고 게시 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타 후보를 비방하거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자유로운 광고를 제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18>

⑤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선거일 7일 전에 선거인에게 1회 발송한다. <개정 2014. 6.18>

제16조(선거운동 금지) ①후보자등과 그 배우자 및 그 직계가족, 선거운동원,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7. 1.18, 시행일 2017.3.1>

1. 다른 후보를 비방, 명예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2.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금품, 향응, 기부, 접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의 당선, 낙선 등 기타 선거에 관한 문서·도화, 인쇄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4.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하는 행위.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거운동원이 당해 후보자등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8, 시행일 2017. 3. 1>
5. 협회 정기간행물에 후보자에 대한 집필, 논평이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성격의 보도와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6. 대외적으로 건축사 또는 협회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7. 제3자나 단체 및 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시키는 행위
8. 그 밖에 위원회가 허가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행위

②협회 정기간행물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은 제1항제5호와 관련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③삭제 <2012. 9.12>

제16조의2(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①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등의 발언과 행위 및 위반사실과 시정여부 및 그 내용을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②위원회의 처분과 결정은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6.18>

1. 불문 또는 기각
2. 주의
3. 경고
4. 후보등록무효(등록취소를 포함한다)
5. 당선무효(당선취소를 포함한다)
6. 투표무효(투표취소를 포함한다)
7. 선거무효(선거취소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처분과 결정은 각 호의 기한까지 하여야 효력이 있다. <신설 2014. 6.18>

1. 후보등록무효는 선거 3일전일까지
2.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는 취임일전일까지
3. 투표무효는 선거당일

④위원회가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때에는 자료제출, 청문 등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6.18>

⑤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처분이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여 선거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14. 6.18>

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직무 또는 업무 수행이나 참여, 진술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6.18>

제 5 장 선거 및 투표

제17조(예비후보자 등록) <제9조의2로 이관, 개정 2017.1.18>

제18조(선거방법) ①선거는 직접, 비밀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선거인 1인 1표에 의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방법으로 한다. 다만, 선거인이 직접 접속이 어려울 때에는 시도건축사회 또는 지역건축사회의 보조를 받아 투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②온라인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14. 6.18>

1.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투표 할 수 있어야 한다.
2. 투표의 비밀과 본인인증 절차 등 직접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한다.
3. 투표 및 개표 과정이 검증되어야 한다.

③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6.18>

④제24조제3호의 사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칠 때에는 7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한다. <신설 2014. 6.18>

제19조(투표소) 투표소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서비스 웹 사이트(http://kvoting.go.kr)로 한다. <개정 2014. 6.18>

제20조(투표양식) ①투표 양식은 제19조에서 정해진 웹 사이트 전자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②기호추첨은 후보자 등록마감후 위원회가 정한 날자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추첨하여 정한다. <개정 2014. 6.18>

③투표 서식은 기호에 따라 전자서식이 정해진 바에 따르되, 동명인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18>

④삭제 <2014. 6.18.>

제21조(투표 및 절차) ①선거인은 제19조에서 정해진 순서와 방법에 따라 투표하되, 절차는 각 호의 순서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6.18>

1. 사이트 접속 : 온라인투표 사이트
2. 로그인 : 로그인 코드 입력
3. 투표정보 조회 : 후보자 확인
4. 인증코드 요청 및 입력
5. 후보자 선택 투표
6. 투표 완료 확인

②선거인은 자기의 투표행위에 대하여 투표가 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제22조(참관) ①참관인은 투·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②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서 정한 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위원회에 신고한다. 다만, 참관인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관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8, 시행일 2017. 3.1>

제 6 장 개표 및 당선

제23조(개표관리) ①개표는 참관인의 입회아래 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4. 6.18>
②투표결과 데이터 등은 당선확정 후 7일 이내에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폐기한다. <개정 2014. 6.18>

제24조(무효투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효투표로 처리한다. <개정 2014. 6.18>
1. 제19조의 온라인투표 사이트가 이상이 없음에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2. 제21조제2항의 본인이 확인을 하지 않아 기표되지 아니한 투표
3. 온라인투표 사이트 상의 문제로 선거인의 10% 미만이 기표가 되지 아니한 투표. 이 경우 차점자에게 해당 득표수를 합산하여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2014. 6.18.>

제25조(당선확정) ①당선확정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이 경우 유효투표의 20%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②단일후보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 득표하여야 당선을 확정한다. <개정 2014. 6.18>
③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 2인으로 7일이내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4. 6.18>
④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4. 6.18>
⑤위원장은 개표결과를 집계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18>
⑥위원장은 당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 7 장 재 선 거

제26조(재선거) ①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4. 6.18>

1. 제16조2제2항제4호의 사유로 후보자가 없거나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한 때
3. 당선인의 피선거권이 무효로 판명된 때
4. 단일후보에 대한 신임투표시 득표수가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미달한 때

② 차점자를 당선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재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14. 6.18>

③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18>

제26조의2(보궐선거) ①정관 제21조제6항의 보궐선거 기한은 각 호와 같다.

1.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2. 잔여임기가 1년 미만 남은 경우 궐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②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직무대행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 사무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6.18]

제27조(이의신청) ①선거결과에 이의가 있는 낙선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내용이 정관 및 이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명백하고 당해 위반사실이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 된 때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제16조의2 제2항의 처분이나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처분과 결정을 회장 취임일 전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4. 6.18>

제 8 장 보 칙

제28조(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6.18>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1997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국가선거관계법령 및 관례에 준하며 필요시에는 세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1997년 10월 14일 제정한 부칙 제2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건축사회	
사무소명			
입회년월일		연 락 처	(사무소)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총회에서 실시될 (회장·감사)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1. 입후보 소견서
2. 이력서
3. 선거공보 원고
4. 기탁금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 (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

예 비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건축사회	
사무소명			
입회년월일		연락처	(사무소)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출하는 회장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입후보 소견서 1부
2. 이력서 1부
3. 기탁금

년 월 일

신청인 예비후보자 (인)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당 선 증

사무소

성 명

귀하는 년 월 일 실시한 대한건축사협회(회장·감사)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건축사협회 선거관리위원장